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448호

문서번호	법무팀-4157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5.12.11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

팀 원	법무팀장	경영지원처장	기획경영본부장	
			12/11	
김채원	강기연	김광석	김우진	
협조				

	No.	감사	의견
일상 감사			

## 소송업무규정 개정(안)

서울특별시 SH공사  
( 기획경영본부 법무팀 )

# 소송업무규정 개정(안) 제안요지

## 1. 개정이유

‘15.9.24 개정된 소송업무규정의 변호사보수기준 개정취지는 개정이후 위임하는 사건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파기환송·재심·재소사건의 착수금감액규정은 ‘원심착수금의 1/2’로 규정하고 있어, 개정 후에도 개정 전 산정된 원심착수금의 1/2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,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하여 소송업무 수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파기환송·재심·재소사건 착수금기준 문구변경( ‘원심 착수금의 1/2 이하’ → ‘별표1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1/2’ )(안 제45조)
-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(안 별지 제3호서식)
  - 소송물 가액변경시, 소송위임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소송업무규정 별표1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의하여 변경계약없이 착수금을 변경하던 것을 계약서 제2조에 괄호로 명시함.
  - 소송업무규정 별표1에 의하여 신청사건 중 변론기일·심문기일 없는 가압류, 가처분사건은 성공보수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별표1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제4조에 단서로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절 차 :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
붙임 신구조문대비표(소송업무규정). 끝.